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1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정비 (안 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19. 8. 8. ~ 8. 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인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2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자에게 참가 상품권 등 지급 시 구체적인 기준 명시 (안 제17조)
- 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 다. 상위법 및 타 조례에 명시된 중복사항 정비(안 제9조~제13조)
- 라. 그 밖에 일상화되어 불필요한 용어정리(안 제2조제9호~제11호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반영 예정
- 다. 입법예고 (2019. 8. 14. ~ 9. 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7조에서 별표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행사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는 2017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어,
운영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여 왔으나,
 - 홈페이지 홍보행사시 구정참여와 구정홍보 등의 효과가 미
흡한 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통해 영등포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으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용어 및 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법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2 전자정부법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에 미리 해당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등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냈을 때에

만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구비서류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실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보도·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통수(通水)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3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특정 종교 관련 행사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종교 편향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진흥사업대상 규정 중 일부사항 개정

- [별표 1] 중 기타행사의 대상 및 범위의 특정 종교 관련 명칭 삭제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19. 7. 18. ~ 8. 7.)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에 종교적 중립상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별표를 개정하여 기타행사 “조찬기도회 등 종무활동”을 “종무행사”로 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종교 차별과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4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재)영등포문화재단이 관리시설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구립정보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 사업범위에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 조항 삽입으로 재단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 조항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 나.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과 교류사업 신설
(안 제4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19. 7. 25. ~ 8. 1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증가하는 지역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사업에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을 추가 명시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문화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